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설(안 제9조2)**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지방세법 제69조의2)도입으로 인한 조례 개정

-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수 있는 근거 신설.

나. **세무담당 공무원의 수납근거 조항 개정(안 제11조)**

○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세무공무원 현금수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

다. **수정신고 대상 주민세 범위 및 수정신고 사유 확대(안 제22조)**

○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지 착오로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함.

라.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안 제25조)**

○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

마. **주택분 재산세 소액납세자 납기 조정(안 제27조의3)**

○ 주택분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함.

바. **경·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안 제36조)**

○ 자동차를 경·공매로 낙찰 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배소비세의 세율 변경(안 제55조)**

○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 규정(영세율 적용)을 삭제.

아. **도시계획세 징수방법 개선(안 제90조)**

○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 지방세법

5. 신·구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6. 입법예고결과 및 참고사항

○ 공고기간 : 2006.2.28-3.20(21일간),2006.3.20-4.10(22일간)

○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군공보 및 군청홈페이지

○ 공고결과 : 다른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의 제목중 **"세무공무원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중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를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제22조(수정신고 납부) 제1항중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과세표준)를 **삭제**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제2항 제3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세율)의 제1항 본문 중 **"법제229조 제1항 및 2항 에서"**를 **"법제229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제2항 제3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o지방세법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의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 -공개대상자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 ---------- ---------- ---------- -------. ②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 ---------- ---.	o소액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정비
제22조(수정신고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수정신고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o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o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및납기)①(생 략)	제27조의3(과세기준일및납기)①(현행과 같음)	o주택분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5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함.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	②----------. 1·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4·5 (생 략) ③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납세의무자) ①·② (생 략) 〈신 설〉	제36조(납세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 하기위함
제55조(세율)■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생 략)	제55조(세율)■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현행과 같음).	o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 삭제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①(생 략)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①(현행과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o재산세 납기개정사유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